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465호)

- 2026. 3. 30.
- 행정복지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3. 10. 서초구청장(스마트도시과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3. 16.
- 다. 상 정 일 자 : 2026. 3. 30.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34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밝은미래국장)

-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공지능사회에 필요한 능력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최종열)

▣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 1. 인공지능 대전환과 국가 법·제도 기반 정비

- 최근 인공지능(AI)은 산업·행정·교육·문화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견인하는 핵심 기반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AI의 확산을 계기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국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산업 진흥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종합적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동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기반 확충을 주요 정책 과제로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 추진에 대한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고,
-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책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고급 실무형 인재 공급이 부족하고, 지역 간·계층 간 디지털 역량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역 기반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¹⁾, 이와 같은 국가 차원의 법·정책 환경 변화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2. 디지털 포용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

-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 혁신, 사회

1) 국회입법조사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정부조직 과제」(2025.9.29); 같은 처, 「모두의 AI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과 과제」, NARS Brief 제109호(2025.10.19).

문제 해결 등 공공영역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그러나 기술 활용 역량의 차이는 경제적·사회적 기회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교육 및 역량 강화 정책은 단순한 산업 진흥 차원을 넘어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디지털포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포용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사회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디지털 접근권 보장을 공공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공지능 교육과 인재 양성은 미래 산업 대비 정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요구되는 공공의 책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 한편 OECD는 「OECD AI 원칙」 및 최근 AI 역량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역량 배양과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회원국의 공동 과제로 제시하고, 특히 지역 단위 교육·훈련 체계 강화를 권고하고 있으며²⁾, 이는 AI 기술 확산에 비해 인력 양성 체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술 격차가 구조적 불평등으로 고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 이러한 국내외 법·정책 기조에 비추어 볼 때,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은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와 디지털 포용 실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과제라 할 것임.

2) OECD, 「OECD AI 원칙」(2019, 개정·보완 지속); Bridging the AI Skills Gap: Is Training Keeping Up, OECD Publishing, 2025.

3. 지역 산업 여건과 인공지능 인재 수요 증대

- 우리구는 양재동 일대를 중심으로 AI 및 ICT 산업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구 지정 및 서울시 정책과 연계하여 AI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양재 AI 미래융합혁신지구와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인공지능 기술 실증, 창업 및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고,
- 이와 같은 지역 산업 구조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융합형 인재의 안정적 공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역 내 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청년 취·창업 연계 과정,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AI 활용 교육 등은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직결되는 요소라 할 수 있으며,
-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교육·복지 등 공공영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 AI 활용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확보의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구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4. 조례 제정을 통한 정책 체계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현재 인공지능 정책은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재 양성 정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충분히 마련되지 못

한 실정이지만, 경기도 및 경상북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 근거 등을 제도화한 바 있으며³⁾, 이는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고,

- 우리 구 역시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자문체계 운영,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중·장기적 실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기조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면서, 우리 구의 산업적 특성과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의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

■ 법적 근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에서 사업자의 창의적 활동을 존중하는 한편,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경제·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

3)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2025. 1. 20. 제정;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2026. 1. 8. 제정.

4)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촉진과 함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구축하도록 한 기본적 책무 규정으로 보여지고,

○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⁵⁾ 및 제6의2호⁶⁾에서는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같은 조 제6항⁷⁾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경우 이러한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방향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고,

○ 또한 법 제16조제2항제3호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과 활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및 활용과 관련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더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⁹⁾에서는 인공지능기

-
- 5)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1. 20.>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 6. 생략
- 6) 6의2.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 ~ ⑤ 생략
- 7)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8)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시책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0.>
 1. ~2의2 생략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 9) 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술의 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 증진과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정책은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영역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지역 산업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일정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상위 법령의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가. 안 제1조(목적)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여 지역 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입법 목적을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관련한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과 조례 전반의 규정이

1.~3. 생략

4.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향하는 정책 목표를 선언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목적 규정은 해당 조례의 정책적 지향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기준과 정책 추진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본 조항 역시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 추진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이후 조문에서 세부 제도와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본 조항은,

-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규율 대상과 정책 영역을 명확히 하고,
-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강화” 및 “인공지능 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을 정책 추진의 직접적 목표로 설정하며,
- 궁극적으로 “지역 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조례의 최종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또한 조문에서 사용된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강화”, “인공지능 사회에 필요한 역량”,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의 문구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규정하기보다는 조례가 지향하는 정책적 가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목적 규정의 선언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후 기본계획 수립, 인재 양성 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 개별 제도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는 구조라 할 수 있고,

○ 이러한 구성은 개별 정책수단을 열거하기보다는 정책의 방향성과 기대 효과를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목적 규정의 일반적인 입법 형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안 제1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정

책 지향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입법기술상 적합해 보임.

나. 안 제2조(정의)

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 인재”란 인공지능기술이 적용 또는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의미를 규정하는 정의 규정으로서, 조례의 적용 범위와 정책 대상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 먼저 제1호의 “인공지능” 및 제2호의 “인공지능기술”의 정의는 상위 법령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동일하게 원용함으로써 관련 정책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용어 해석의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입법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 한편 제3호의 “인공지능 인재”는 인공지능기술이 적용 또는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상위 법령에서 별도로 정의

하고 있는 법적 용어라기보다는 본 조례의 정책 대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차원에서 규정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 특히 인공지능 인재의 범위를 기술 개발 인력뿐 아니라 기술 활용 역량을 갖춘 인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의 대상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이나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 대상 또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며,
-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안 제2조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 기술 개념을 준용하는 한편, 조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인재 개념을 자치법규 차원에서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범위와 정책 대상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 정 안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 안 제3조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정책 추진과 지원 역할을 규정한 조항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적 책무를 명시하려는 취지

라 할 것이고,

- 먼저 제1항은 구청장이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책무규정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정책적 선언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규정은 이후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등의 제도적 근거와도 연계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 다음으로 제2항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입법 형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나 정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 재량을 부여한 규정이라 할 것이며,
- 이러한 책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정책 조례에서 통상적으로 두고 있는 규정 유형으로서, 정책 추진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향후 관련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체계상 필수 규정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안 제3조는 조례의 정책 운영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적 규정에 해당하고, 조문의 내용 및 형식 측면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보여짐.

라.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 정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4조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다른 자치법규와의 적용 관계를 규정한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특정 정책 분야를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관련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자치법규 간 적용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정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기술적 장치라 할 것이고,
- 특히 본 조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례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보충적 적용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 이러한 규정 방식은 동일 정책 분야에서 여러 자치법규가 함께 적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 간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자치법규간 적용 관계를 정리하는 규정으로서 입법 형식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마. 안 제5조(기본계획)

제 정 안
<p>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3.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계획4.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및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연계한 산업 현장 중심 인재 양성 전략5. 그 밖에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p>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업별 추진 일정, 예산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p>

○ 안 제5조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 계획 수립 체계를 규정한 조항으로 먼저 제1항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 규정의 성격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책 조례에서는 해당 정책 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본 조항 역시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를 일정 기간 단위로 정립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 제2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인

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계획 수립의 기본적인 내용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 제1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정책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되는 전략적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본계획의 핵심적 구성 요소에 해당하고,
- 제2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 수단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방안 계획 단계에서부터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 제3호(재원 조달 계획)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점에서 정책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 제4호(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및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연계 전략)는 지역 사업 기반과 연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특히 연구개발, 창업, 기업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산업 환경과 교육 정책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산업 생태계와 인재 양성 정책 간의 상호 연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제5호(그 밖에 필요한 사항)는 정책 환경 변화나 새로운 정책 수요

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정한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형식으로 볼 수 있음.

- 제3항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기본계획이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라면 시행계획은 사업별 추진 일정, 예산,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러한 계획 체계는 중장기 정책 목표와 연차별 사업 추진을 연계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관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 계획 구조로 볼 수 있음.
- 제4항은 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인공지능 관련 정책 계획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정책 계획 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는 동일한 정책 영역에서 별도의 계획을 각각 수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이나 계획 간 불일치를 방지하고 정책 운영의 통합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한 안 제5조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중장기 정책 계획과 연차별 실행 계획이 상호 연계되어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운영 구조를 규정한 조항으로, 지역 산업 환경과 연계한 인재 양성 전략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정책계획에 포함될 주요 사항을 일정 부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정책 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짐.

바. 안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 정 안
<p>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방안 4.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 5. 그 밖에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p>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p>

- 안 제6조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문체계를 마련하는 취지라 할 것이고,
- 먼저 제1항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입법 형식에 해당하고, 특히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자문위원회 설치 여부를 정책적 필요성이나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제2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 대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각 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의 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학연 협력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음.

- 제1호(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사항)는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과 연차별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정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 제2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을 자문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교육 내용의 전문성과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으며,
 - 제3호(산학연 협력)는 인공지능 산업과 교육 분야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을 자문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산업 현장의 수요와 교육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 제4호(기타 필요한 사항)는 정책 환경 변화나 새로운 정책 수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문 범위를 일정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입법 형식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제3항은 본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에 따른 인공지능위원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이는 동일한 정책 영역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이나 위원회 중복 문제를 고려한 규정이라 할 것임.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분야별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나 심의·자문 대상시 유사하게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 조직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입법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 또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은 인공지능 산업 정책, 기술 활용 정책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이미 설치된 인공지능 정책 관련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은 정책 자문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일정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이러한 점들을 전제로 한 안 제6조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에 관한 자문체계를 마련하면서도 기존 위원회와의 기능 연계를 통해 위원회 설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한 규정으로서, 정책 자문의 전문성과 행정 운영에 관한 효율성·합리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됨.

사. 안 제7조(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

제 정 안
<p>제7조(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2.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디지털포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디지털포용 교육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임직원에게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교육 4. 인공지능기술 실증, 경진대회 및 성과 확산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기업 또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관련 정책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함께 마련하려는 조항으로서,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이 실제 행정사업으로 구체화되는 핵심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앞선 조문들이 정책 추진의 기본 틀과 행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성격을 가진다면, 본 조항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이 구체적인 사업 형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실행 규정이라는 점에서 조례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중심 조항이라 할 것임.

○ 먼저 제1항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과 관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주요 정책사업의 유형을 각 호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교육, 산업 현장 활용, 기술 확산 및 혁신 활동 등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음.

- 제1호(청년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는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층의 취업 및 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지역 인력 경쟁력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큰 분야로 판단되고, 특히 창업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와 지역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이 상당한 사업 유형으로 보여지고,

-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는 「서초 AI 칼리지」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시대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8조, 제9조
- 사업기간 : 2026.01. ~ 10.
- 지원대상 : 19~39세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 총사업비 : 279,950천원
- 사업내용 :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AI관련 고급(심화프로젝트,재직자)과정 운영
 - (교육) 코딩, 머신러닝·딥러닝, AI·빅데이터, 피지컬·버티컬 AI 등
 - (취업지원) 기술면접특강, 이력서·자소서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 지원

□ '19~'25년 추진실적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기 간	4.14~9.30. (총 27주)	4.1~9.30. (총 26주)	4.24.~10.27. (총 25주)	3.28.~9.16. (총 24주)	3.29.~9.30. (총 24주)	6.10.~12.14. (총 27주)
참여인원	118명 (118명→60명→30명)	169명 (169명→73명→20명)	100명 (100명→42명→22명)	456명 (456명→80명→30명)	295명 (295명→60명→23명)	306명 (306명→100명→60명→30명)
내 용	2단계(심화, 프로젝트)	3단계(기초, 심화, 프로젝트) 차수별 우수자 선발				4단계(입문, 공통기술, 심화, 프로젝트)
수료인원	20명	15명	18명	29명	23명	29명
운영주체	카이스트 SW교육센터					
총 예산	279,950천원	279,950천원	278,900천원	278,900천원	231,400천원	214,950천원

- 제2호(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교육)은 아동, 청소년, 중·장년 및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과 함께 「디지털포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 문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디지털 역량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정보 접근권 확대와 사회 참여 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지는 사업으로 보여지고, 주민 전체의 디지털 역량 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고,

□ 주민 AI 교육 운영 현황(2026년 운영 예상 강좌)

운영부서	교육주관기관(장소)	강좌수(개)
아동청년과	서초스마트유스센터	6
교육지원과	교육지원센터(2), 평생학습관, 아버지센터, 도서관(5)	124
스마트도시과	서초스마트에듀센터 등	75
여성보육과	서초여성가족플라자(3)	40
어르신행복과	서초50플러스센터, 서초스마트시니어교육센터, 느티나무쉼터(4), 노인종합복지관(3)	150
계	24	395

- 위 교육 중 「주민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주민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기 간 : 2026. 3. ~ 12.
- 장 소 : 서초스마트에듀센터 (양재환승주차장 4층)
- 내 용
 -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간 1100시간 교육 운영
 - 주민 대상 AI 활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최신 트렌드 지능정보화교육 운영
 - 디지털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디지털 콘텐츠 이용방법 학습
- 2025년 추진 현황
 - 교육과정 편성 : 1,097.5시간 (강좌 91개, 교육인원 2068명, 이수인원 1912명)
 - 강의만족도 : 92.6%, 강사만족도 : 95.6%
- 2026년 추진 계획
 - 교육과정 편성 : 1,100시간(정규강좌 70개 및 특별강좌로 구성)
 - 편성예산 : 90,350천원

□ 주민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예시(2026.3월/4월)

NO	교육기관	강좌명	관리부서	교육대상
1	주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ChatGPT로 여는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도시과	서초구민
2		AI 예술가 뮤직 & 아트	스마트도시과	서초구민
3		AI가 도와주는 똑똑한 엑셀	스마트도시과	서초구민
4		Google Gemini AI 스마트 활용	스마트도시과	서초구민
5		캔바(Canva) 디자인	스마트도시과	서초구민
6		Vrew 숏폼 영상 제작	스마트도시과	서초구민
7		무료 AI로 완성하는 스마트업무	스마트도시과	서초구민
8		윈도우11기반의 AI도구 활용	스마트도시과	서초구민
9		키네마스터 AI 영상편집	스마트도시과	서초구민
10		미리캔버스로 시작하는 AI 디자인	스마트도시과	서초구민
11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 AI)	스마트도시과	서초구민
12		ChatGPT 입문에서 활용까지	스마트도시과	서초구민
13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	스마트도시과	서초구민
14		AI 업무 자동화 도구	스마트도시과	서초구민

- 제3호(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임직원 대상 인공지능기술 활용 교육)는 지역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생산성 향상과 업무 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구성원의 기술 활용 역량을 높이는 것은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대기업에 비하여 디지털 전환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육 지원은 지역 산업의 디지털 순환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일정한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 제4호(인공지능기술 실증, 경진대회 및 성과 확산 사업)는 인공지능 기술의 실제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기술 활용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서, 기술 실증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적용하여 그 효과와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기술 확산과 혁신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판단되고, 또는 경진대회나 성과 확산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인재를 발굴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인공지능 관련 활동과 기술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제5호(그 밖에 필요한 사업)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의 변화와 정책 수요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정책사업의 범위를 일정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여지고, 인공지능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사업 유형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필요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정책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정책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 실증 사업, 산업 연계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포함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사업은 일정한 재정적 지원이 수반될 때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정책 실행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 할 것임.

- 또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 단체 등이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기술 확산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두는 것은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의 공익성, 사업 수행의 적정성 및 재정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 사항임.
- 이를 종합하면 안 제7조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의 구체적인 사업 유형을 규정하고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이 실제 행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규정이라 할 것임.

아. 안 제8조(사무의 위탁)

제 정 안
<p>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 안 제8조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

활용 교육, 실증 사업, 경진대회 및 성과 확산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나 교육 운영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관련 분야의 전문 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역량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정책 수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기술 실증 사업, 산업 연계 교육 등의 경우 대학, 연구기관, 산업 관련 기관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 수행에 참여할 경우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전문 기관 등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정책 운영 측면에서 일정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 한편 본 조항은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사무 위탁의 절차,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위탁 사무의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기존 자치법규 체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관련 자치법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명시한 것은 사무 위탁 과정에서의 행정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입법 방식이라 할 것임.
- 다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탁 사무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위탁 대상 사무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 과정과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행정적 관리·감독과 성과 평가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성과 아울러 특히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은 교육 및 기술 활용과 관련된 공익적 성

격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탁 운영 과정에서도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할 것이고,

-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는 안 제8조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전문기관 등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기존 자치법규에 따른 위탁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타당한 규정이라 할 것임.

자.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 정 안
<p>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 안 제9조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은 교육, 연구, 산업, 기술 활용 등 여러 분야가 상호 연계되는 정책 영역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단독의 행정 기능만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대학, 연구기관, 산업계 및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될 때 정책 효과가 보다 높아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것은 정책 수행 기반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 할 것임.
- 특히 인공지능 인재 양성은 교육기관과 산업 현장의 수요 간 중요한 정책 분야라는 점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연구 협력, 기업과의 산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사업

추진 등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정책 정보 교류나 우수 사례 확산, 공동 정책사업 추진 등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로서 기술 발전과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주체 간의 협력과 정보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정책 추진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 이를 종합하면 안 제9조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기관, 산업계,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정책 주체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려는 규정으로서, 인공지능 정책의 특성과 정책사업 추진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과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경제·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련 기술 역량을 갖춘 인재의 확보가 국가 및 지역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일정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조례안 내용상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정책사업 추진, 자문기구 운영, 사무 수행 방식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이 일정한 정책 방향과 행정적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치법규상의 기본 체계에 적합한 입법 구조로 보여짐.
- 특히 본 조례안은 청년 대상 인공지능 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교육, 기업 임직원 대상 인공지능 기술 활용 교육, 인공지능 기술 실증 및 성과 확산 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의 추진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이 교육, 산업 및 기술 활용 분야와 연계된 형태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일정한 정책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문위원회를 통한 전문적 의견 수렴,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행정사무 위탁 근거 마련,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은 교육 정책, 산업 정책, 디지털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영역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관련 부서 간 정책 조정과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사업 성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와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더불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지역의 교육·산업 환경과 관련 기관 간 협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조례 제2조제3호 인공지능 인재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단순 활용까지 포함되어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게 됨. 이에 대한 부서의견은?

답) 인재 양성 조례안의 양성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기초, 심화, 실무, 재교육까지 포함하는 포괄개념으로 구민대상 교육이나, 산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인력 교육 모두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것임.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과 수준이 차이가 나지만 오히려 이 조례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통합을 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하고 예산사업 관리에도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 5. 토론사 및 토론요지: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0. 체계사구정리내용 : 없음